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40 발의연월일: 2020. 8. 6.

발 의 자:김도읍・유상범・조수진

권명호 · 윤한홍 · 태영호

김성원・이 용・강기윤

金炳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임용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11조의2는 계급별 근속 승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 제3항)에 따라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1년의 근속기간을 단축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근속기간 단축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찰공무원의 업무 능률을 제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근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제한할 수 있다.
- 1.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 교류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우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 1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근속승진) ① (생 략)	제11조의2(근속승진) ① (현행과
<u><신 설></u>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제한할 수 있다.
	기가 기가 하는 한가 교기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인 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 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 또는 적 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 1년
<u>②·③</u> (생 략)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